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95
----------	-------

발의연월일 : 2025. 8. 11.

발 의 자 : 조경태 · 김 건 · 윤영석
안상훈 · 고동진 · 서일준
엄태영 · 배현진 · 박정하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양식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없이는 사실상 양식업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강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 강요행

위를 근절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 7호 및 제51조제5호 신설 등).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27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7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제36조제1항 중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제2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2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제7호”로 한다.

제5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① 양식업종사자

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① 면허권자는 <u>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① ----- ----- <u>제27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7호</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면허의 취소)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면허의 취소) ①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u>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u>

② (생 략)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①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제2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양식업권의 지당권자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51조(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①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2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제7호-----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허가의 취소) -----

-----.

-----.

1. ~ 4. (현행과 같음)

5.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제57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① 양식

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
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
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
·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